

의안번호	2205576
의 퇴 인	정태호 의원
회 답 일	2025. 2. 10.
추계번호	24A5115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‘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결정위원회’ 및 자문기구를 신규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,200만원, 2029년 9천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억 93백만원(연평균 79백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위원회 설치 (안 제10조의2제1항)	37	74	76	77	79	344	69
조사·자문기구 설치 (안 제10조의2제5항)	5	11	11	11	11	49	10
추가재정소요	42	85	87	89	90	393	79

주 1) 2025년은 부칙 규정(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)을 감안하여 하반기의 추가재정소요를 반영한 것임

주 2) 추가재정소요 합계는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존재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의2 (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결정위원회)	① 기획재정부장관은 ‘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결정위원회’를 둔다.	의무규정
		② 위원회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·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구 또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조의2 (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결정위원회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회의장소 임차료나 지원인력 등 별도 부대경비는 가정에 반영하지 않음
 - 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결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
 - 최저임금위원회는 민간위원 27명으로 구성되며, 2024년 기준 총 11회 개최됨(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)
 - 지급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당 25만원으로 가정하고, 추계기간 동안 국회 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제함
- 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지원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비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자문기구인 연구위원회 소요비용에 준하는 것으로 가정
 -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는 학계, 노사단체, 관계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, 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사항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
 - 연구위원회는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, 2024년 기준 총 3회 개최됨
 - 민간위원 지급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인당 25만원으로 가정하고,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제함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계기간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추계방법

- (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결정위원회) 유사 사례인 최저임금위원회를 참고하여 민간위원 27명을 위촉하여 연 11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연평균 89백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 - 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결정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참고로 전체 민간위원은 27명으로 전제
 - 회의 횟수는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개최실적을 참고하여 연 1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기획재정부의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및 최저임금위원회 지급액인 회당 25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[표 2] 비용추계 기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(국회예산정책처 전망)

(단위: %)

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 물가상승률	2.1	2.0	2.0	2.0	2.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전망(2024.10.)

- (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자문기구) 유사 사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를 참고하여 민간위원 7명을 위촉하여 연 3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연평균 8백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 - 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자문기구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위원회 운영을 참고로 민간위원은 7명, 회의는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은 최저임금위원회 지급액인 회당 25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물가상승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(2) 추계결과

- 공공기관 임금·근로조건 결정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,200만원, 2029년 9천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억 93백만원(연평균 79백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위원회 설치 (안 제10조의2제1항)	37	74	76	77	79	344	69
조사·자문기구 설치 (안 제10조의2제5항)	5	11	11	11	11	49	10
추가재정소요	42	85	87	89	90	393	79

주 1) 2025년은 부칙 규정(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)을 감안하여 하반기의 추가재정소요를 반영한 것임

주 2) 추가재정소요 합계는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존재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태정립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태정립	02-6788-4652	jitae@nabo.go.kr